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캘리포니아 사업 확인 및 신고 방법 캘리포니아 사용세 납부

캘리포니아 사업: 납부해야 할 캘리포니아 사용세의 확인 및 신고 방법

이 간행물이 설명하는 내용은 타주의 판매자로부터 실제 상품(예: 소모품, 가구, 비품 및 장비) 구매 시 부과되는 사용세를 확정하기 위해 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체가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징수 및 신고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한 판매자로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사용, 보관 또는 소비할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세율은 현지 판매세율과 동일합니다.

사용세는 타주 판매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실제 제품을 판매할 때 경쟁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사용세는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기업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구매하든 주 밖에서 구매하든 관계없이 주 및 지방의 각종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에 상당 부분 기여하도록 보장합니다.

타주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한 사용세는 언제 납부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용, 보관 또는 소비하기 위해 타주 판매자로부터 실제 상품을 구매할 때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타주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소재의 구매자의 구매에 대해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징수 및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매자는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 캘리포니아 조세 수수료청)에 직접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타주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영수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품목의 설명, 구매 금액, 세액, 판매자 이름, 주소,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 번호(또는 사용세 등록 번호),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타주 판매자는 종종 캘리포니아 주 총 세율(현재 7.25%)로 세율을 적용하지만 구매자는 최초로 해당 상품을 사용할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효한 총 세율로 사용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위치가 특별 조세 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해당 구역에 유효한 총 세율이 적용됩니다(주 전체 세율 + 해당 구역 세율). 판매자가 구매자의 지역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구매자는 나머지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의 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세율을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 사용세 관련, 구매 인보이스 검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 유사한 상품을 주 외부의 사업체로부터 구매할 때는 사용세가 적용됩니다.

타주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구매 인보이스를 자세히 확인하여 해당 소매업체가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기한 내에 징수했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이전 섹션 참조). 총계정원장 자산 계정 및 연방 소득세 신고 감가상각 일정을 검토하면 사용세가 부과될 수 있는 구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용세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해당 판매자가 판매자 허가나 등록 증명서-사용세 자격이 있다면 실제 상품을 구매한 해당 판매자 또는 CDTFA에 사용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세 납부를 위한 계좌가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서로 사용세를 Franchise Tax Board (FTB; 캘리포니아 주세무국)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주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매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하여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사용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경우 경우 타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판매자가 CDTFA에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 및 취급" 비용에는 캘리포니아 사용세가 적용됩니까?

배송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1. 일반 운송업자, 계약 운송업자 또는 미국 우편을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
2. 인보이스에 배송, 선적, 운송료 또는 배송료가 별도의 요금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및,
3. 요금이 실제 배송 비용보다 높지 않을 경우.*

*실제 배송비를 확인하려면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배송 비용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구매자는 과세 품목 구매와 관련된 전체 배송비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배송비에 과세됩니다. 배송에 "취급"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취급 부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판매(예: 재판매를 위한 판매)와 관련된 배송 및 취급 비용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ublication 100, Shipping and Delivery Charges](#) (간행물 100-K, 선적 및 배송비).

캘리포니아 사용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 판매자 허가를 받은 경우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품목을 최초로 사용, 보관 또는 소비한 날짜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동안 신고서의 "사용세가 적용되는 구매"란에 구매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CDTFA에서 판매자 허가를 받을 때 분기별 납부 또는 분기별 선납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각 신고 기간이 끝난 후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 첫 번째 분기의 신고 기간은 3월 31일에 마감되고, 세금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다음 달 말일인 4월 30일이 됩니다.
- **사용세 신고를 위한 필수 등록 "자격을 갖춘 구매자"**는 수익 및 과세법 [6225항](#)에 따라 CDTFA에 등록하고 매년 사용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현재 사용세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구매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자격을 갖춘 구매자"는 연간 사업 운영을 통해 최소 \$100,000의 총 수입이 있었고 달리 CDTFA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구매자로 정의되었습니다. 총 수입액은 주 내 및 주 외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의 총액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구매자"의 정의가 개정*되어 해당 구매자가 사업 운영을 통해 연간 총 수입액이 최소 \$100,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해당 구매에 부과된 사용세가 이 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소매업체 또는 세금 징수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사용세가 적용되는 구매(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제외)액이 역년 기준으로 연간 \$1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9년 1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구매자"에 대한 정의는 사업 운영을 통해 연간 총 수입이 최소 \$100,000인 사람으로 환원됩니다.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에서 [허가 등록](#) 아래 [온라인 등록](#)을 선택한 후 [신규 사업 활동 등록](#)을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을 하면 신고서 제출 이후에 납부해야 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세 신고를 위해 CDTFA 사무소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간행물 126, 서비스 기업을 위한 필수 사용세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의회 법안 1097 \(연방법 2023, 355 장\)](#).

-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서** 위에 설명된 사용세 납부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서에 사용세를 FTB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FTB 소득세 신고서 지침에는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세 신고에 도움을 주는 도구인 사용세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세표는 \$1,000 미만의 개인의 구매에만 사용되며 사업자의 구매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세가 부과되는 사업자 구매는 실제 사업자 구매 영수증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세 납부 기한은 주 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사용세 신고 책임이 발생한 날짜는 주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된 과세 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FTB는 징수된 사용세를 CDTFA에 전달합니다. 자격을 갖춘 구매자인 경우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 **소비자 사용세 계정.** 타 주 판매자로부터 과세 대상 구매를 자주 하지만 사용세 계정에 자격을 갖춘 구매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해당 구매자는 CDTFA에 등록하고 소비자 사용세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세가 적용되는 구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매자는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에서 허가 등록을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해야 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CDTFA 사무소에서 직접 사용세 신고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해당 구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분기별 납부 또는 분기별 선납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각 신고 기간이 끝난 후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 첫 번째 분기의 신고 기간은 3월 31일에 마감되고, 세금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다음 달 말일인 4월 30일이 됩니다.

- **차량, 선박 및 항공기** 이러한 구매에는 특별 규칙 및 보고 요건이 적용됩니다. [규정 1610](#), [차량, 선박 및 항공기](#)와 다음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 [간행물 52](#), [차량 및 선박: 사용세](#)
 - [간행물 79](#), [순중량 5톤 이상의 등록 선박 및 캘리포니아 세금](#)
 - [간행물 79A](#), [항공기 및 캘리포니아 세금](#)
- **일회성 구매에 사용세가 적용되는 구매** 판매자 허가가 없고 자격을 갖춘 구매자로서 사용세 계정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CDTFA 웹사이트에서 사용세가 적용되는 구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cdtfa.ca.gov에서 [세금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선택하고 [신고 및 납부를 클릭하세요](#). 등록한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해야 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CDTFA 사무소에서 직접 사용세 신고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세는 2012년 이전에 구매한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는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 자산을 최초 구매하고 사용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구매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세금을 만기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벌금과 이자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1-800-400-7115(TTY:711)번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구매 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있습니까?

소비자로서 판매세 및 사용세 외에도 일반적으로 타이어, 납축전지, 연초 및 담배 제품, 목재 제품, 모니터 달린 전자 장치(예: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또는 타주 판매자가 제공하는 선불 전화기 및 카드(선불 모바일 전화 서비스(MTS))를 구매할 때는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타주 판매자가 구매에 대한 세금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세금 또는 수수료를 CDTFA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 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

타이어, 납축 배터리, 연초 및 담배 제품 또는 모니터 달린 전자 장치를 구입했을 경우 타이어, 납축 배터리, 연초 및 담배 제품 또는 모니터 달린 전자 장치 구매에 대해 계정을 등록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세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에서 허가 등록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CDTFA 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목재 제품이나 선불 MTS를 구매한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일회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CDTFA 웹사이트 onlineservices.cdtfa.ca.gov를 방문하십시오.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율은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에서 [세금 및 수수료율](#)을 선택한 다음 [특별세 및 수수료율](#)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나열된 리소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TTY:711)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30~오후 5:00(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근무합니다.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무소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office-locations.htm)에서 모든 사무소 위치가 포함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TTY:711)번으로 문의하세요.

인터넷

www.cdtfa.ca.gov

CDTF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법률이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예: 법률, 규정, 양식, 간행물, 산업 가이드 및 정책 안내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판매자 허가증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 확인\(Verify a Permit, License, or Account\)](#)참조).

다국어 버전의 간행물은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formspubs/all-forms-and-publications.htm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용한 다른 리소스는 California Tax Service Center (캘리포니아주 세무 서비스 센터)(www.taxes.ca.gov)입니다.

세금 정보 보고서

분기별로 제공되는 *Tax Information Bulletin*(TIB;세금 정보 보고서)에는 특정 유형의 거래 시 법률 적용에 관한 글, 새롭게 개정된 간행물 소식 및 기타 관련 글이 실려 있습니다. 웹사이트(www.cdtfa.ca.gov/taxes-and-fees/tax-bulletins.htm)에서 최신 TI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TFA 업데이트 이메일 리스트에 등록하면 TIB 시간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 및 세미나

CDTFA는 납세 신고서와 관련한 개별지도를 포함한 판매세 및 사용세 기본 사항에 관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의는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특정 강의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지역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서면 세금 자문

보안을 위해 세금 자문은 서면으로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CDTFA에서 거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서면 자문을 제공받았고, 귀사가 해당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또는 이자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자문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문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이 모두 설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세·수수료 정보에 대한 서면 자문을 구하려면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email)에 방문하여 자문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 요청을 서신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목재 제품 평가세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MTS) 추가세를 포함한 판매세 및 사용세의 일반 정보를 받아보려면 다음 주소로 요청해 주십시오.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기타 모든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자문은 다음 주소로 요청해 주십시오. Program Administration Branch, MIC:31,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1.

납세자 권리 보호

납세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일반적 경로(예: 관리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publication 70](#) *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간행물 70-K,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권리의 이해)를 참조하거나 1-888-324-2798로 연락하여 [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팩스 번호는 1-916-323-3319입니다.

원하는 경우 다음 주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Taxpayers' Rights Advocate(납세자 권리 옹호자), MIC:70,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캘리포니아 조세 수수료청),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규정, 양식, 간행물 및 제조업 가이드

간행물별로 목록이 다릅니다.

유용한 선택된 **규정, 양식, 간행물**, 및 **업계 가이드**는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부 출판물의 스페인어 버전도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규정

- 1628 운송비
- 1684 소매업체의 사용세 징수
- 1685 구매자의 세금 납부
- 1686 소매업자에게 지불한 세금 영수증
- 1823 거래(판매)세 및 사용세의 적용
- 1827 소매업체의 사용세 징수

간행물

- 79 순중량 5톤 이상의 등록 선박 및 캘리포니아 세금
- 79A 항공기 및 캘리포니아 세금
- 100 선적 및 배송비
- 110 캘리포니아주 사용세 기본 사항
- 126 서비스 기업을 위한 필수 사용세 등록

소셜 미디어 팔로우



간행물 123-K | 2024년 7월